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727

발의연월일 : 2026. 11. 12.

발 의 자 : 김태선・박해철・임호선
박지혜・백승아・김영환
한준호・허성무・임미애
서미화・윤후덕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폐기물을 골재・토사제품 등으로 재활용하여 복토재・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인・허가나 신고 등의 행정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해당 제품의 재활용 기준 준수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사전 확인 및 사후 관리 절차가 미흡하여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토・복토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또한 농지・산지 등의 보전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이들 토지에서의 폐기물 사용 제한 등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폐기물을 재활용한 골재・토사제품을 성토・복토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대한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 재활용 골재도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성토・복토 대상부지 관할 행정기관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농지・산지 및 환경오염 우려가 큰 토지에 대해서는 폐기물

을 복토재·성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재활용을 가장한 불법 성토·복토 행위자의 경우 불법 매립 행위자와 동등한 벌칙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3조의2, 제13조의7, 제18조, 제38조의2, 제63조 등).

법률 제 호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재활용 골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재활용골재등”이라 한다)을 복토재·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수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골재등의 제품 승인 및 공급계획 제출·승인에 관한 사항
2. 재활용골재등의 유해물질 함유량 및 토양오염도 등에 관한 사항
3.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에 관한 사항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골재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제1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7(복토·성토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폐기물(재활용골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복토재·성토재·채움재 또는 배수층 설치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2.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3. 침수 또는 지반침하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저지대 또는 연약지반으로서 지하수위, 지반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같은 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관계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토지에서 해당 전용 목적의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의 종류·성상, 사용방법 및 해당 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성 확보 기준에 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농지개량·산지복구 또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및 이를 재활용하여 만든 물질·제품에도 적용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중 “사업장폐기물”을 “사업장폐기물(재활용골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복토·성토의 보고) ① 재활용골재등을 복토재·성토재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복토·성토 대상 부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복토재·성토재로 사용하려는 재활용골재등의 종류·양, 유해물질 등의 함유량, 이에 관한 검사·분석 결과 및 사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복토·성토 시작 및 완료에 관한 사항

3. 복토·성토 전후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시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에 제2호의2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재활용골재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13조의7제1항을 위반한 자

제66조제1호 중 “제65조제1호의”를 “제63조제2호의2의 경우와 제65조제1호의”로 한다.

제68조제2항에 제9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5.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 ② (생략)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원칙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오염 예방 및 저감방법의 종류와 정도, 폐기물의 취급 기준과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후단신설>	③ ---------- ---------- ---------- ---------- ---------- ----------. 이 경우 재활용 골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재활용골재등”이라 한다)을 복토재·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수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1. 재활용골재등의 제품 승인 및 공급계획 제출·승인에 관한 사항
<신 설>	2. 재활용골재등의 유해물질 함유량 및 토양오염도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3. 제18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입력에 관한 사항
<신 설>	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활용골재등의 보고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3조의7(복토·성토 등의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폐기물(재활용골재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복토재·성토재·채움재 또는 배수층 설치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 2.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 3. 침수 또는 지반침하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큰 저지대 또는 연약지반으로서 지하수위, 지반의 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같은 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관계 법률에 따른 농지전용 또는 산지전용의 허가·협의 또는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토지에서 해당 전용 목적의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2.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폐기물의 종류·성상, 사용방법 및 해당 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성 확보 기준에 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농지개량·산지복구 또는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환경오염 방지 및 안전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폐기물 및 이를 재활용하여 만든 물질·제품에도 적용한다.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 ② (생 략)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장폐기물(재활용골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 ⑤ (생 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8조의2(복토·성토의 보고) ①

	재활용골재등을 복토재·성토재로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복토·성토 대상 부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복토재·성토재로 사용하려는 재활용골재등의 종류·양, 유해물질 등의 함유량, 이에 관한 검사·분석 결과 및 사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복토·성토 시작 및 완료에 관한 사항 3. 복토·성토 전후 주변환경에 대한 영향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시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3조(벌칙)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재활용골재등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13조의7제1항을 위반한 자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6조(벌칙) ----------.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 (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 ---------- 제63조제2호의2의 경우와 제65조제1호의----------
1의2. ~ 19. (생 략)	1의2. ~ 19. (현행과 같음)
제68조(과태료) ① (생 략)	제6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 9의4. (생 략)	1. ~ 9의4.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5.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 12의4. (생 략)	10. ~ 12의4.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